2026년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7. 7. 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손수호, 안효질, 최태경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7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방윤섭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93건(안건번호 제2026-117926호~12121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117926호~117960호(순번 1~35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117961호~117966호(순번 36~41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PDF 파일 거래를 위한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117967호~118100호(순번 42~175번)는 블로그, 웹하드 등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6-118101호~121218호(순번 176번 이하는 모두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권고 2건(안건번호 제2026-223호~22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223호~224호(순번 1~2번)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7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방윤섭 전문위원: 저작물명, 사이트명이나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위원 모두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 사이트명 등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방윤섭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등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금일 심의 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396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3,293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3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번~35번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

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번~35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5번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6번~41번은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출판물의 PDF 파일 거래를 위한 글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36번~41번은 판매 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을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36번~41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6번~41번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되어 있을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2번~17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42번~175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42번~175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순번 42번~175번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A 위원: 다만, 출판물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로서 해당 원저작물의 출판 연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향후 채증 내용 등을 보완해 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76번 이하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공감세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92번(‘공감세포’)은 2026년 7월부터 방영되어 디즈니플러스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개 화를 100포인트에 판매 중임.

(‘맨 끝줄 소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44번(‘맨 끝줄 소년’)은 2026년 6월에 공개되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전체 화를 판매 중임.

(‘하나 코리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146번(‘하나 코리아’)은 2026년 7월 8일 개봉 예정인 국내 영화로 웹하드에서 70포인트에 판매 중임.

(‘키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177번(‘키퍼’)은 7월 8일 개봉 예정인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40포인트에 판매 중임.

순번 176번~3293번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76번 이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가결에 동의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6번~3293번 중 이미 삭제 또

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117926호~117960호(순번 1번~35번), 제2026-117961호~117966호(순번 36번~41번), 제2026-117967호~118100호(순번 42번~175번), 제2026-118101호~121218호(순번 176번~329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김성주 분과위원장: 2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2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의 시정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함.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2개 사이트의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바,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차단조치를 할 필요도 있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복제·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표와 같이 주요 권리자들에게 공문 등으로 심의 대상 사이트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링크를 공중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링크 제공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정범의 범죄 실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의 일환으로서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하므로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번~2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은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가결함.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223호~224호(순번 1번~2번)는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7. 14.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손수호

위원 안효질

위원 최태경